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 친화적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확대하고, 분할출원을 한 경우에도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및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재산포인트의 출원인과 대리인간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출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조사용 번역문 서류의 제출형태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6조, 법 제141조 또는 법 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 1개월 이내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의견서제출기간: 4개월 이내
3.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등 기타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 2개월 이내

제40조의2제1항제1호 중 “분할출원, 분리출원”을 “분리출원”으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제1호 중 “분할출원, 분리출원”을 “분리출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바목 중 포괄위임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괄위임장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은 대리인인 변리사 ○○○(대리인번호: 0-0000-000000-0), 변리사 ○○○(대리인번호: 0-0000-000000-0), 변리사 ○○○(대리인번호: 0-0000-000000-0), ...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

- 위임사항 -

- A01. 특허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 A02. 특허권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 A04. 특허출원의 포기
- A05. 특허출원의 취하
- A06. 특허출원에 관한 청구의 취하
- A07. 특허출원에 관한 신청의 취하
- A08.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 A09. 특허권의 포기
- A10. 특허출원에 기초한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주장
- A11. 특허출원에 기초한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취하
- A12. 특허출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A13.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A15. 특허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A16.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A18. 특허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A19.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의 청구
- A20.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른 정보의 제공
- A21.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
- A22.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이중출원
- A23.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 A24. 특허이의신청의 취하
- A25. 특허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 A26. 특허심판에 관한 심판청구의 취하
- A27. 특허심판에 관한 신청의 취하
- A28. 특허심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A29.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
- A30.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
- A31. 특허취소신청의 취하
- A3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신청의 취하
- A33.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B01.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 B02. 실용신안권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 B04.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포기

- B05.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취하
- B06.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청구의 취하
- B07.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신청의 취하
- B08. 실용신안권의 포기
- B09.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른 우선권주장
- B10.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취하
- B11.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B14.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B17.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B19. 타인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
- B21.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
- B22.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
- B23. 타인의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
- B24.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불복심판관련 모든 절차
- B25.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 B26.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취하
- B27. 실용신안등록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 B28. 실용신안등록심판에 관한 심판청구의 취하
- B29. 실용신안등록심판에 관한 신청의 취하
- B30. 실용신안등록심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B31.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
- B3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B33.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B34. 타인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의 청구
- B35. 타인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
- B36.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
- B37.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취하
- B38.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관한 신청의 취하
- B39.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C01.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 C02. 디자인권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 C04.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
- C05. 디자인등록출원의 취하
- C06.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청구의 취하
- C07.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신청의 취하
- C08. 디자인권의 포기
- C09.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C1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C11.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C12.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C13.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C14.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C15.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C16.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55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
- C17.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
- C18.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 C19.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

- C20. 디자인등록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C21. 디자인등록심판에 관한 심판청구의 취하
 C22. 디자인등록심판에 관한 신청의 취하
 C23. 디자인등록심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D01.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D02. 상표권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D03.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D04. 상표등록출원의 취하
 D05.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청구의 취하
 D06.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신청의 취하
 D07. 상표권의 포기
 D08.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D09.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D10.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D11.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D12.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D13.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법」 제49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
 D1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
 D15.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D16.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취하
 D17.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D18.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D19.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D20.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D21. 상표등록출원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D22. 상표등록출원이의신청의 취하
 D23. 상표등록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D24. 상표등록심판에 관한 심판청구의 취하
 D25. 상표등록심판에 관한 신청의 취하
 D26. 상표등록심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D27.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제외),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 제외) 상호간의 변경출원
 D28.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상표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
- E00. 상표의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관련된 본국관청에 관한 모든 절차
- F00.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

G00. 지식재산포인트 조회 및 사용

20XX. X. X.

위임자

(서명 또는 인)

[포괄위임 설명확인]

위 대리인으로부터 포괄위임의 중요사항(위임범위, 기간, 철회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설명일자	. . .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	-----	-----------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0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제조사용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한 전자적 형태의 문서(XML)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설>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② (생략)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심사

관이 정할 수 있는 의견서제

출기간: 4개월 이내

3.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

른 보정기간 등 기타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 2개월 이내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1. ----- 분리출원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①・② (생략)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 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이 <u>분할출원, 분리출 원</u>,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 리자의 출원인 경우 2. 3. (생략) ④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u>분리출원</u>----- ----- ----- 2.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